

1995. 12. .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議 會 運 營 委 員 會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年 12 月
議會運營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發議日字 : 1995年 12月 19日
- 나. 發議者 : 西區議會 姜熙烈 議員外 5人
- 다. 回附日字 : 1995年 12月 20日
- 라. 上程日字 : 1995年 12月 26日
- 마. 開催回數및日數 : 1回(95年 12月 26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金永俊 議員)

가. 提案事由

-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을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만 지급

-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가능
-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토록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본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4. 質疑 및 答辯要旨書 : 생 략

5. 檢討 要旨 : 없 음

6. 審査 結果 : 원안 의결

7. 少數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제4조(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3조의 출석일수로 본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p> <p>< 삭제 ></p>